

광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합533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고 1. A영농조합법인

2. B

3.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동기

변론 종결 2022. 3. 24.

판결 선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 A영농조합법인,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500,451원 및 그중 267,553,964원에 대하여 2021. 4. 1.부터 2021. 5. 2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영농조합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영농조합법인, B가,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4.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피고 A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지급채권 66,324,621원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초하여 E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20. 4. 29. 피고 C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5.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A은 2020. 10. 29.경 E은행에 대한 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 A은 2020. 4. 29. 사해의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가까운 장래에 사전구상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발생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기로 하여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은 판결을 청구한다.

나. 피보전권리 판단

1)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와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2045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8. 2. 22., 2019. 2. 21. 피고 A과 별지 2 청구원인 가.항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이 같은 날 E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표 기재 대출금액을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9호증,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F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구례군, 순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20. 4. 29. 원고의 사전구상권 발생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C는 2020.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A이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이자를 2020. 9. 21. 이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E은행은 2020. 10. 29. 원고에게 '같은 날 이자연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통지를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하였고 원고는 이때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권(이하 '이 사건 사전구상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전구상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등기상 계약성립일인 2020. 4. 29.부터 약 6개월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기간만으로도 이를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 A은 2020. 10. 29.경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20. 9. 16.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전까지 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 없이 잘 납부하였다. 또한 G은행과 H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경우 2020. 4. 29.경보다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다.

G은행	12,000,000원	I	29,000,000원
J은행	1,285,000,000원	H	42,000,000원
E은행	664,000,000원	전남신용보증재단	30,000,000원
K은행	10,000,000원	신용보증기금	264,000,000원

라) 피고 A은 2020. 8. 24.부터 2020. 10. 20.까지 2019년도 법인지방소득세 11,478,593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 A은 E은행에 대한 채무 중 이 사건 대출을 뺀 나머지 대출금에 대하여도 2020. 9. 16.부터 이자를 연체하였으나, 2020. 10. 14.까지 위 나머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여 그 나머지 대출에 대하여는 연체해제처리가 되었다.

바)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전남 구례군 L 지상 건물 1동, M 지상 건물 1동, N 답 737㎡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C의 피고 A에 대한 오리초생추1) 매매대금채권으로서 적어도 피고 C가 공급을 중단한 2016. 11. 23.경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 12. 31. 기준으로 피고 C는 피고 A에 171,757,710원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A은 2017. 6. 22. 피고 C에 2017. 10. 30.까지 1억 원, 2018. 4. 30.까지 71,757,710원을 분할지급하고, 2017. 10. 30.까지 위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화순공장, 구례직판장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 A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C가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 A은 2019. 7. 31.경 피고 C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232,729,970원의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1억 원을 2019. 11. 30., 1억 원을 2020. 6. 30., 잔액 32,729,970원을 2020. 12. 31.까지 각 변제하고, 1회라도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A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잔액확인 및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후 피고 A이 피고 C에 위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자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피담보채권의 발생 경위 및 시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경위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등기에 기재된 2020. 4. 29.이 아니라 적어도 2019. 7. 31.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에 의하면 더욱 가까운 장래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구상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부족하다.

아) 피고 A의 운영자인 피고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이 2020. 5. 11. 원리금 연체로 부실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운영자가 동일하지만 피고 A과 O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점, O이 부실처리 된 이후 상당기간 동안 피고 A이 다수 채무에 대한 이자 연체 없이 운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구상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피고 A, B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봄메

판사이신애

판사김경중

별지

1) 부화한지 얼마 안 된 병아리